

백영화 연구위원

요 약

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공·사의료보험 연계 관리를 위한 보험업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음. 개정안에 의하면,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연계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공동 소속으로 공·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를 둠.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현황 및 상호 영향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연계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해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. 연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, 실태조사의 대상·시기·방법, 자료 제출 요청의 범위·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공동 시행령에서 정하게 될 예정임

-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2021년 1월 7일 각각 보험업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음
 -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,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이 서로 연계하여 관리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
 - 실손의료보험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각각 보험업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임
 - 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공동 시행령을 통해 규정할 예정임
- 공·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의 설치
 -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이 연계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 관련 정책의 종합·조정을 위해 노력해야 함(보험업법 개정안 제193조의2 제1항,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제90조의2 제1항)
 -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공동 소속으로 공·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(이하 “연계위원회”)를 둠(보험업법 개정안 제193조의2 제2항,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제90조의2 제2항)
 - 연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, 심의 대상·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함
- 실태조사 등
 -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현황 및 상호 영향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연계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(보험업법 개정안 제193조의2 제3항,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제90조의2 제3항)

- 실태조사의 대상, 시기,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
-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실태조사를 위하여 연계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(공공기관, 요양기관, 보험회사, 보험협회, 보험개발원 등)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(보험업법 개정안 제193조의3 제1항,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제90조의3 제1항)
 - 다만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정보, 개인정보, 신용정보, 진료정보에 대해서는 연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요청을 할 수 있음
 - 자료 제출 요청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
-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연계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음(보험업법 개정안 제193조의3 제2항,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제90조의3 제2항)

○ 비밀유지의무

-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연계 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·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됨(보험업법 개정안 제193조의2 제5항,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제102조¹⁾)
 -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·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, 개인정보 외의 정보나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·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함

1)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서는 “연계위원회(위임·위탁을 받은 자 포함)”를 비밀유지의무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